

# 환경관련질의답

## 폐기물배출자 교육 대상자 선정

Q

당사는(이하 “A업체”라 칭함)는 제조업체로서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여 향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회사에 “A”업체소속 근무 직원은 없고 협력업체(이하 “B업체”라 칭함) 직원만이 근무하고 있을시, 사업장 배출자 교육과정을 “B”업체 직원이 대신 이수 할 수 있는지요?

상기 협력업체(B업체)는 “A”업체와 공장운영에 관해 도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라도 “B”업체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없나요?

A

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사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가 받아야 하며 협력업체(공장운영에 관해 도급계약

을 체결한 경우 포함) 직원이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 폐목재소각시설 소각물질 건

Q

당사는 1992년도에 설립된 가구제조업체로써 폐목재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재가구제조공정중 발생하는 합판(PLY WOOD), PB(PATICLE BOARD), MDF 조각 등을 현 폐목재소각시설에서 소각하고 있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PB, MDF, 합판 원재료 제조공정중 소량의 수성본드 성분이 들어감.)

합판, PB, MDF은 목재류에 포함되며 폐목재 소각시설에서 소각이 가능합니다.

A

## 조경용 호소정화시 슬러지 처리방법

Q

골프장이나 리조트 시설에 있는 조경용 호소가 수질이 나빠졌을 때 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부유물질과 침전물 등을 약품에 의한 부상 방법으로 제거시켜 청정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슬러지를 수거하여 물과 함께 주변 초지 혹은 산야에 살포 시켜도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A

호소수 정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 처리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나 재활용 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하며 임의로 산지 등에 살포하여서는 안됩니다.

##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전선 처리방법

Q

당 현장은 통신케이블 공사 현장으로 공사시 폐전선이 발생합니다.

폐전선 발생량이 5톤 이상일 경우와 5톤 미만일 경우에 처리방법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1) 5톤 이상일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종류:폐전선)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전문)처리업으로 허가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가 가능한지? 또는 다른 처리방법이 있는지?

질문 2) 5톤 미만일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고철처리업자에게 처리가 가능한지? 또한 고철처리 가능시 별도 대관인허가 및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만약 고철처리가 안 된다면, 다른 처리방법은?

**A**

통신케이블 공사현장에서 폐전선이 5톤 미만 발생할 경우 생활폐기물로서 고철업자에게 처리할 수 없으며 당해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5톤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장일반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재활용전문 포함)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 대기자가측정 관련

**Q**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B-C(0.3%) 및 공정부생가스(S 0.01% 이하)를 연료로 가열시설(1종)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열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는 Dust,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며 방지시설로는 Dust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집진장치를 가동중입니다. 황/질소산화물은 방지시설 의무면제시설로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Dust에 대해서는 1종시설로 1회/주 자가측정을 실시며,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비고2,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당해 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대기배출시설(가열시설) 및 방지시설(전기집진시설)로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배출구 전체에 대하여 방지시설의 설치면제시설로 볼 수 없을 것이나,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측정항목 중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 관련

**Q**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고자 합니다. 업종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며, 폐기물의 종류는 알류미늄 슬러지(고상)입니다.

질의 1) 일반 카고트럭(4대)을 폐기물관리법 상의 수집운반업 허가 요건중 하나인 밀폐식 차량으로 볼 수 있는지?

p.s : 알류미늄 슬러지는 톤백으로 밀봉된 상태이며, 밀폐식 차량이 아닌 버켓로드, 덤프트럭, 암롤 등의 차량으로는 상차 및 운반하기가 곤란한 설정입니다.

질의 2) 밀폐식 차량의 정의는 무엇인가?

질의 3) 일반 카고트럭에 폐기물을 상차하여 천막 덮개로 완전히 덮어서 운반 할 경우 밀폐식 차량으로 볼 수 있는지?

**A**

밀폐식 차량이란 적재함의 사면과 상하가 닫혀있고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된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카고 트럭에 천막을 덮어서 운반할 경우 밀폐식 차량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여부

**Q**

현재 관리지역(청정지역 해당)에서 15년 동안 공장을 하는 사업자로서 기존 공장의 면적이 6500제곱미터입니다. 금번 사업장의 부지증설을 2000제곱미터를 계획하는데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법규에서 “관리지역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청정지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7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증축 또는 개축(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부지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이 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에 포함한다.”로 되어있는바 이럴 경우 당 사업장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으로 판단되나 건축사무실 등에서 상담을 해본바로는 10년이 지난 개발행위는 합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공장의 경우도 이를 적용하는지 정확한 판단이 서지를 않아 질의를 드립니다.

**A**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2 제2호 비고3의2 조항에 따라 「수질환경 보전법 시행령」별표7에 따른 청정지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7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증축 또는 개축(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은 5,000 m<sup>2</sup> 임. 따라서 기존 공장이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5천 m<sup>2</sup>) 이상(6,500m<sup>2</sup>)으로 개발한 상태에서, 연접한 지역의 추가 개발면적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면적의 30%(1,500m<sup>2</sup>)를 초과하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제2호 비고 6에 따라 증설면적은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에 포함됨.

## 감량의무사업장배출 음식물류 수집 운반

**Q**

질의 1) 개별 사업장폐기물(일 300KG 이하 배출로 폐관법 제2조 3호,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음식물류폐기물 김량의무 사업장(일 300KG 이하 배출로 폐관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2규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신고자가 직접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수집, 운반, 처리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 2) 상기 1)번이 가능하다면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아 부착한 상태에서 운반을 해야합니까? 아니면 자가 차량 이용

시 운반증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습니까?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신고를 필한 자가 수탁 받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자가 차량으로 수집·운반이 가능하며, 동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관리대행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대기2종)에서 환경관리대행업체에 위탁할 시 환경관리업체에서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가 관리대행업무를 볼 수 있나요?

폐기물처리시행규칙 별표10. 관리인자격기준에 보면 감염성폐기물처리업에서는 폐기물산업기사, 임상병리사, 위생사 중 1인 이상으로 나와 있으며, 비고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할 때에는 대기보전법, 수질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이 기술관리인을 겸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법을 보면 가능 할 것도 같은데 환경관리대행위탁시에도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기환경관리인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 비고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관리인이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진동환경관리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진동환경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중간처리업 기술능력은 중복 선임이 불가함에 따라 별

도의 인력을 폐기물중간처리업의 기술인력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의 기술인력은 대기환경관리대행업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 대기배출시설 해당유무



금속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에 해당하는 세척기(용적 1m<sup>3</sup> 이상)를 사용합니다. 세척기에는 금속의 표면 이물질 제거를 위해 세척조에 메타크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이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합니까?

그렇다면 대기배출시설 허가와 방지시설이 필요한가요?

메타크린에 의한 오염물질이 악취 이외에 다른 것이 있나요? 만약, 악취뿐이라면 악취배출시설이므로 악취관리지역 이외는 허가가 필요 없나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종전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금속의 표면처리시설중 금속의 표면에 묻어 있는 오물 등 이물질을 유기용제 등으로 제거하는 세척조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탈지시설)에 해당됩니다.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하며(특별대책지역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함),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동 규칙 별표8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적정 처리하여 배출되게 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허가 또는 신고신청서에 대기방지시설의 설치내역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는 사용원료, 부원료, 공정조건(열원, 압력, 화학반응 등)에 따라 제조공정별로 각각 다르므로 질의내용만으로 대기배

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를 알 수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 등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배출시설에서 악취만 발생되는 경우에는 대기배출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악취방지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금속의 표면처리시설중 용적 1m<sup>3</sup> 이상의 탈지시설은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악취관리지역내에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매립폐기물 처리 건



현재 고속도로 공사 수행중에 있으며 공장 지장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원지반으로 하여 8~10m 흙쌓기 후 도로를 신설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5년전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었다는 정보가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1) 흙쌓기가 예정되어 있어 공사구간에 저촉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처리해야 한다면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토지이용 및 공사계획상 지하구조물 및 매립폐기물 등을 제거할 필요가 없거나 일부만을 제거하여도 되는 경우 제거한 부분만을 폐기물로 적정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매립된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인 경우 당해 폐기물로 인한 주변환경의 위해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할기관의 장이 제거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치의무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불법투기·매립 행위자, 폐기물의 위탁자(수탁자의 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사용을 허용한 토지의 소유자 등입니다. ☺